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7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해 2011.7.15. 조례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5.5.15. 일부 개정한 이후 시설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이를 정비하고 그간 개정된 관련 현행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1항에 의거 법 제21조의5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시설 사용료를 개선하여 안정적 수익구조화를 도모함.
- 나. 효율적인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한 시설사용료 정비하고(조례 제6조 시설사용료) 관계법령 개정 및 운영에 따른 현행화 하고자 함.(조례 제13조 관리·운영의 위탁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01. 17.~ 2022. 02. 06.) 특기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호 중 “제8조”를 “제9조의7”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 ① 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중 “운영비 일부를”을 “운영비 등을”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수탁적격자”를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시설사용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비수기		성수기	비 고
		평일	주말,공휴일		
주차료	경차	1,500	2,000	2,0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2,000	3,000	3,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3,000	4,000	4,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4,000	5,000	5,000	
야영장		10,000	10,000	10,000	1조/1일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m ²	70,000	100,000	100,000	4시간 초과시 시 간당 20,000원 추가
	세미나실 27m ²	30,000	40,000	50,000	1일/1실
숙박 시설	숲속체험관	60,000	100,000	100,000	1일/1실
	숲속의집(카라반)	70,000	110,000	110,000	1일/1개소
다목적 운동장	1시간	15,000	20,000	20,000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3:30까지이며, 입장시간은 21:00까지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연휴일 경
우 마지막 공휴일의 전일까지)을 말한다.
3. 성수기는 매년 7. 15 ~ 8. 24까지, 비수기는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
4.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추가징수
5. 숙박시설의 기준인원은 다음과 같다.
 - 독립형 : 4인
 - 숲속체험관 : 4~6인 (성인4, 청소년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p> <p>2. ~ 3. (생략)</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u>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p>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 ----- ----- -----.</p> <p>1. ----- -----<u>제9조의7</u>----- ----- ----- ----- -----</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u>군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단서 신설>

-----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 운영비 등을 -----
-----.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휴양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 담당팀장으로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2020. 6. 2.>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

[제목개정 2017. 12. 2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산림과장 이 성 모
연락처	(033) 330 - 2450